

규 격 서

1. 건 명 : 2026~2027년 시흥물환경센터 슬러지 농축용 고상폴리머 구매

2. 품 명 : 고상폴리머(유기응집제)

3. 수 량 : 68톤

가.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 구매 예상량을 추정한 수량이며, 처리장의 운영 상황에 따라 계약수량 증감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
나.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납품 요구량으로 분할 납품한다.

1) 3톤/회 (=300kg/톤백×10개), 1~3회/월

※ 톤백의 규격은 고상폴리머 주입설비에 적합하도록 발주처와 상의하여 정한다.

2) 계약상대자는 폐 톤백을 매회 수거하여 폐기 처분하고, 처리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.

4. 납품 기간 : 계약일부터 365일까지

가.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변경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
1) 계약상대자의 조달청 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

2) 발주처에서 계약기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

5. 성분 및 성능 규격

가.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마감 일시까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시스템에 유기응집제(고상, 4710160801)를 제조 물품으로 등록한 업체로서, 제품의 규격서상 분말(고상), 양이온성, 이온성 1.0meq/g 이상, 점도 200cps 이상을 만족하는 제품

나. 'Floc 크기 8mm 이상, 강도 '강', TTF50% 2초(생슬러지 및 잉여슬러지) 이하, Floc 잔류 폴리머 없음 이상(기존제품 성능 동등 이상)

- 1) 실험 조건은 슬러지 200mL에 폴리머 최적 주입량을 투입한 조건임
- 2) Floc 크기는 평균적인 Floc 지름을 mm 단위로 표현, 8mm 이상으로 기존제품 성능 동등 이상
- 3) Floc 강도는 응집 후 손 탈수 시 응집 강도, '강' 이상으로 기존제품 성능 동등 이상
- 4) TTF 여과포 사양은 경사60, 위사20, 목80, 60메쉬, TTF50% 2초(생슬러지 및 잉여슬러지) 이하로 기존제품 성능 동등 이상
- 5) 교반 후 상등액에 잔류 폴리머 없이 기존 제품 성능 동등 이상

6. 납품 장소 : 경기도 시흥시 공단2대로 14 시흥물환경센터

7. 납품 조건

가.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청량에 대해 각 납품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한다. (주문일과 법정공휴일 및 토·일요일은 동 기간에 산입하며, 휴일에도 납품 가능하여야 함)

나. 폴리머는 포장 단위(300kg/톤백)로 포장하여 발주처 납품 요구량에 따라 분할 납품하며, 발주처 감독 하에 입고 처리한다.

다. 계약상대자는 납품작업자의 안전 보호구 착용을 의무화하고,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교육 등 제반 조치를 철저히 한다.

라. 계약상대자는 납품에 필요한 처리장 설비 사용에 주의하며, 처리장·공익 등에 손실, 손해, 위해 등을 발생시켰을 경우 이를 지체없이 변상, 보상, 복구 등 조치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 책임과 비용을 부담한다.

마. 자연 납품 등으로 계약상대자가 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줄 경우 발주처는 본 계약을 정지·해지, 업체 제재 등을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실·손해, 변상·보상 등 일체 책임과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.

8. 품질검사 및 납품 물량 확인

- 가. 최초 품질검사는 발주처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하여 발주처가 지정하는 공인시험기관에 시험 의뢰한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.
- 나. 수시 품질검사는 발주처에서 성분규격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언제든지 실시할 수 있고, 발주처가 지정하는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.
- 다. 수시 성능검사는 발주처에서 성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언제든지 실시할 수 있고, 발주처 입회하에 시료 채취 및 lab 테스트를 실시한다. 테스트 방식은 Jar Test 와 함수율 분석을 포함하여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방식을 적용한다.
- 라. 계약상대자는 약품 납품 시마다 제조사 시험 성적서 원본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마. 본 물품이 성분 및 성능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, 계약상대자는 즉시 납품 수량을 전량 회수하고 최적의 제품을 재납품하여야 한다.
- 바. 납품 물량은 매회 운반 시 공인계량소에서 계량한 실 중량으로 하고, 계량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,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.
 - 1) 매회 납품하는 물량은 계약상대자와 발주처가 서로 확인 후 인수인계한다.
 - 2) 계약상대자는 납품 실중량이 표기된 계량증명서 원본을 납품 시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사. 발주처는 생산과정에서의 품질관리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불시에 공장 검사를 할 수 있다.

9. 안전관리

- 가. 물품 납품 시 주변을 오염하거나 시설물을 손상할 경우 원상 복구 하여야 하며, 이로 인한 민·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한다.
- 나. 산업안전보건법, 중대재해처벌법,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 법 및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안전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, 이를 불이행할 경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귀속한다.
- 다.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, 만약 의무사항을 이해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.

10. 대금 지급

- 가. 대금 지급은 분할납품 요구량에 대하여 납품 완료 및 품질검사, 물품 검수 완료 후 매월 혹은 상호 협의하여 정산 및 지급한다.

11. 기타사항

- 가. 물품공급이 원활히 수행되지 않아 처리장 운영에 지장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 외에 타 업체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추가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.
- 나.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응집제의 제조·운반 및 판매에 관한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미준수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모든 민·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.
- 다. 계약상대자는 최초 납품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와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며, 변동사항 발생 시 마다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.

라.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처리장 설비나 시설을 훼손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지체없이 복구하고,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, 손해, 위해 등에 대해 일체의 책임과 비용을 부담한다.

마. 본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, 기타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 또는 견해가 상이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발주처의 결정에 따른다.

바. 본 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의 관할법원은 우리 센터 본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.